

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

의 안	
변 호	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집행 기간 : 2025. 7. ~ 12.

나. 집행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	집행내역 및 집행예정액					잔액	집행내역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계		
2025 서울 빛초롱 축제	650,000	-	-	450,000	200,000	650,000	-	2025 서울빛초롱축제 운영(창계천/우이천) 및 행사 홍보
서울관광 해외홍보	300,000	-	-	-	300,000	300,000	-	빅모델 활용 잠재시장 디지털 미디어 활용 옥외광고 추진
서울 썸머비치	185,000	-	-	185,000 (집행완료)	-	185,000	-	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, 시설물 재배치 및 추가 브랜딩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 :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제안근거 1부. 끝.

※ 작성자 :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 노준식 팀장 (☎ 3788-8137)

기획예산팀 방지수 대리 (☎ 3788-0856)

붙임

제안근거 _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

-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 <신설 2019. 9. 26>